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15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오세희 · 허종식 · 강준현
안태준 · 박선원 · 박희승
박용갑 · 이훈기 · 이재관
위성곤 · 윤종균 · 이연희
이광희 · 채현일 · 임호선
이강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

조약2 신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6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2(국내 반입차단 어린이 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u> <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